

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
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
니다.

2024. 8. 2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
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
과 긍지를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급대상 확대(안 제9조 제7호, 제8호 신설)
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041호(2011.9.15.)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

나. 기타 띄어쓰기 등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8. 20. ~ 8. 25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–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–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4년 8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**규정함을목적**”을 “**규정함을 목적**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**제 3조 제 1호**”를 “**제3조제1호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**의하여설립된 단체와 「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**”을 “**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「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**”으로, “**단체를말한다**”를 “**단체를 말한다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**아니라국가보훈**”을 “**아니라 국가보훈**”으로, “**위한복지시책**”을 “**위한 복지시책**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사업은다음**”을 “**사업은 다음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**좌석배치에있어서**”를 “**좌석배치에 있어서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**지역출신회생·공헌자**”를 “**지역 출신 회생·공헌자**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다음각 호**”를 “**다음 각 호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**그밖**”을 “**그 밖**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호 중 “**대한수수료**”를 “**대한 수수료**”로 한다.

제9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(다만, 유족

은 배우자에 한한다)

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041호(2011.9.15.)
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
해당하는 지원대상자(다만,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<u>규정함을목적</u> 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규정함을 목적</u> ----- --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
1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 3조 제 1호의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<u>제3조제1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2. “보훈단체”란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설립된 단체와 「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」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의 관리·감독을 받는 <u>단체를말한다</u> .	2. ----- ----- <u>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「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</u> ----- ----- ----- <u>단체를 말한다</u> -----
3. “보훈복지”란 국가보훈관계	3. -----

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
뿐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에
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
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
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.

제5조(예우 및 공훈선양사업) 국
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
공훈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
같다.

1. (생 략)
2. 군이 개최하는 중요행사에
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
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
상의 예우 실시
3. (생 략)
4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
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
출신희생·공헌자의 공적 계
재 및 소개
5. ~ 7. (생 략)

제6조(보훈단체 예산지원) 군수는
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
다음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
원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
4. 그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

-- 아니라 국가보훈 -----

----- 위한 복지시책
-----.

제5조(예우 및 공훈선양사업) ---

----- 사업은 다음 -----
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--- 좌
석배치에 있어서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
----- 지역
출신 희생·공헌자-----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보훈단체 예산지원) -----

다음 각 호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-----

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사업

제7조(보훈복지 등) 군수는 관계
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
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
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
원할 수 있다.

1. (생 략)
2. 군이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
· 허가, 기타 신고 신청의 수
리 등에 대한수수료 감면
3. · 4. (생 략)

제9조(지급대상) 제8조에 따라 명
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
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
으로 한다. 다만, 당사자만 지급
하고 제11조에 따른 중지 사유
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
계되지 아니한다.

1. ~ 6. (생 략)
- <신 설>

--

제7조(보훈복지 등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----- 대한 수수료 ---
3. · 4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지급대상)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
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해당
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
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

<신 설>

상대상자(다만, 유족은 배우자
에 한한다)

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
원에 관한 법률」 제11041호
(2011.9.15.)로 개정되기 전의
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
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
는 지원대상자(다만, 유족은
배우자에 한한다)